경 제 혁 신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 |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|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
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|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http://www.mosf.go.kr
http://www.fsc.go.kr
http://www.customs.go.kr
http://www.fss.or.kr

2015년 4월 1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**4월16일(목) 14:00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과장 김남규(044-203-4040), 이길준 사무관(4043)
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과장 유형철(044-215-7610), 온정성 사무관(7613)
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과장 최용호(02-2156-9750), 박재훈 사무관(9764)
관세청 외환조사과 과장 김태영(042-481-7930), 문진규 사무관(7924)
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 국장 이익중(02-3145-7200), 석일권 선임검사역(7202)

모뉴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무역금융 전면쇄신

- 무역보험공사 감독 강화, 무역보험공사 및 은행 인수심사 강화 등 -

□ 정부는 4월16일 **모뉴엘 사건*과 관련**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**관계부처**(기재부, 금융위, 관세청, 금감원 등) **합동**으로 **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**함

* 자회사 인수, 사옥건설 등 무리한 경영으로 자금난에 직면하자 허위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여 무역금융(총 6,672억원, 무보 보증액 3,282억원)을 편취하였음

○ 작년 10월 모뉴엘 사건 이후 **비위행위와 관련**하여 **관세청**('14.10월)과 **검찰**('15.1월)**의 조사 및 발표**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, **동 재발방지 대책은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·운영**('14.12~'15.4월)**하여 마련**하였음

□ 금번 대책은 모뉴엘 사건과 같은 **대형 무역금융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** 관련 제도를 **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혁신**하고, **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쇄신을 추진**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음

○ 다만, **획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** 경우, 건실한 **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이 위축**될 우려가 있으므로, **일반 중소·중견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행 방식**을 유지하되,

○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**탈법·사기 가능성이 큰 보험·보증 종목**을 대상으로 **일정규모 이상의 수출기업에 대해 심사를 강화**하고 **리스크 관리 제도를 혁신**하는 방식으로 개선

〈 모뉴엘 사고원인 〉

□ 모뉴엘 사건의 경우, 무역거래 특성상 **다수의 기관**이 **부정거래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**을 수행해야 하나, 금번 사고시에는 **未작동**함

○ 모뉴엘 사건은 **허위 수출을 확인**하는 데 있어서 무역금융의 **제도적 미비,** 무역보험공사·수은 및 은행의 **업무 처리 소홀** 등에 기인하였음

○ 또한, **관련 임직원의 비위행위 및 도덕적 해이**도 발생함

〈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〉

1 **(무역보험공사 감독 강화)** 현재 산업부·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으나, 향후 금융감독의 전문성 보강을 위해 **산업부 장관 요청시 금융감독원을 통한 검사가 가능**하도록 **무역보험법을 개정**할 예정임

* 새마을 금고는 주무장관의 검사 요청 등을 통해 금감원이 검사를 수행

2 **(무역보험 인수심사 강화) 무역금융 제도를 악용**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**미흡한 측면을 보완**하기로 하였음

① 거액건(U$1백만 초과)에 대해 **수출계약 진위 확인을 의무화**하여 허위수출을 통한 무역금융 편취를 사전에 차단하겠음

* (사유) U$1백만 초과건은 건수기준 24%(510/2,127건), 한도책정금액 기준 80%(U$1,646/2,068백만)로서, 전체 건수 24%를 확인하여 총금액 80%를 관리

② 해외위탁가공·중계무역에 대해 **수출실적 인정분을 조정(100% → 70%*)**하고 거액건에 대해서는 **현장실사를 의무화**할 예정임

* 인정기준 근거 : 제조업체의 원재료 및 외주가공비가 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%임

③ 보험한도 심사시 **거액한도件**(U$1억 초과)**은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결재**하도록 함으로써 **심사의 책임성을 강화**하겠음

* 현재 거액한도件은 인수위원회 또는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책임 분산

④ 무역보험 약관 제·개정시 **보험계약자**(은행 등)**의 의견을 청취**할 수 있는 **협의체를 구성**하여 **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**할 계획임

3 **(무역보험 리스크 관리 강화)** 특정기업에 대한 **과다 지원을 방지**하고, **기업의 재무상태 확인을 강화**하여 **무역보험 리스크를 최소화**하겠음

① 현재 **상품별로 지원한도를 관리**함에 따라 **수출실적 대비 과도한 한도**(수출실적의 100% 초과)**보유가 가능**하였으나, 향후 **기업별 관리 예정**

* 지원한도(전년 수출실적의 1/3까지 책정) : 상품별로 한도 부여 → 기업별로 부여
* 다만, 금번 제도변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

② 수출기업의 재무건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에 **분식회계 적출시스템을 신규로 도입**하고

* 은행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분식회계적출시스템을 구축·운영 중

- **거액한도**(U$1천만 이상) **보유** 또는 **실적 급증 기업**을 대상으로 **특별 모니터링(연 2회)을 실시**하겠음

③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상품별·부서별 사고율과 손해율을 분석하여 **지속적으로 관련 상품 및 제도를 개선**하고,

- **거액 한도를 보유한 수입자**(U$1천만 이상 무작위 추출)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**보험사고를 최소화**하겠음

4 **(수은 중소·중견 여신제도 개선)** 현장점검 확대를 통해 **허위거래 가능성을 차단**하는 **등 심사를 강화**하겠음

① **수출채권 매입時** 해외위탁 가공무역 거래를 포함하여 **모든 수출거래**에 대해 여신 승인 이전에 **생산현장 방문을 의무화**하겠음

② **수입자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미만**일 경우 수입자 직접 방문 등 **직접 접촉**을 통해 **거래의 진위여부를 검증**하겠음

③ 내부 인력조정을 통해 **여신감리 독립부서**(여신감리실)**을 신설**하여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**여신심사 역량을 강화**하겠음

5 **(은행권 여신심사·사후관리 강화)** 금융기관에서도 허위수출 방지 및 기업 경영상황 확인을 위하여 **관련 조치를 강화**하기로 하였음

* 금감원에서 무역금융 관련 국내은행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시스템 개선을 기지도하였으며 향후 검사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할 예정

① 은행의 **수출채권 매입시** 거래계약서, 운송증, 수출물품 인수증빙서류, 선하증권 등 관련 **기본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***하겠음

* 선사화물 추적시스템 등을 통한 실제 선적 및 운송여부 등 확인, 무역금융을 취급하는 담당직원에 대한 전문 교육연수 강화

② 무보의 보증비율을 **현재 100% 전액 보증**에서 **기업규모에 따라 차등* 보증**하는 **부분보증제를 시행**함으로써 **은행의 심사강화를 유도**할 계획임

* 대기업 : 90%, 중견기업 : 95%, 중소기업 : 99%

③ 분식회계를 찾아내는 성능을 높이고, 적출기업에 대한 **사후점검을 강화**하는 등 **분식회계 적출시스템을 정교하게 개선**하겠음

〈 수출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〉

□ 수출 유관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**모뉴엘과 같은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**하겠음

① **해외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강화**하고, 무보가 보유한 수입자 정보를 **금융권, 수출유관기관, 일반기업 등에 제공**('15.하, 무보)하겠음

② 무보·은행은 무보 보험관련 수출거래실적, 선하증권 위조여부 등 보유정보를 **상호 공유**하겠음

③ '**무역보험편취 방지**를 위한 **유관기관 협의회'를 운영**(관세청 주관, 매반기 정기 개최)하여 **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**할 예정임

〈 무역보험공사 등의 조직쇄신 〉

1 **(내부 감사 강화)** 현행 외부지적(감사원 등)에 따른 **사후감사 위주**의 무보 내부 감사를 **사전예방* 감사로 전환**하겠음

* 내부고발자 익명 신고시스템 도입 및 IT기반 상시모니터링 감사 실시

2 **(비리 예방을 위한 징벌제도 강화)** 비리 소지를 **사전에 예방**하고 향후 관련자에 대해 **일벌백계로 징계를 강화**하겠음

① 무보 내부 징계위원회 구성시 **외부위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***하여 제식구 감싸기식의 **형식적 처벌을 차단**하겠음

* 현행 내부 6명 → 향후 총 9명(외부 5명, 내부 4명, 위원장은 외부위원)

② **무보 2급(부장급)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**하고, 직무 관련 **금품 수수시, 이유여하를 막론**하고 **면직 조치하겠음**

* (현행) 금품수수 금액에 따라 징계수준(감봉-정직-면직)을 차등화

③ 수출입은행 직원이 직무 관련 금품 등 수수 후,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**금액에 상관없이 면직(원스트라이크 아웃)**하고, 부패행위자에 대한 **징계양정 결과를 공개**하겠음

④ 공금 유용·횡령시 신분상 징계처분 外 피해액의 5배까지 부과하는 **징계부가금 제도*를 도입**하고,

* 우선, 무보 내부 규정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행('15.上)하고, 향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제화 추진

- 현재 형사 처벌만으로 종결하던 비리사건에 대해 앞으로는 **형사처벌 外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반드시 청구**하겠음

⑤ 산업부·금감원 공동감사 결과에 따라, **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관련자**에 대해서는 **무관용 원칙**으로 **징계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**를 취할 예정

〈 향후 계획 〉

□ 금번 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**무역보험법 및 내부규정 등으로 제도화하여 시행토록** 할 예정이며, 모뉴엘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**관련 기관과 함께 철저히 감독**하기로 함

○ 무역보험법('15.2월 국회 旣상정) 개정, 무역보험공사 단기·중장기 인수요령, 인사관리 규정 개정 등을 **'15년 상반기 내에 완료**하겠음

□ 금번 대책으로 인한 **중소·중견기업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**하기 위해 '**무역금융 애로해소* 대책반'을 지속 운영**('14.12월~)할 예정임

* 무역협회, 무역보험공사, 중기중앙회에「무역금융 애로신고센터」를 설치·운영중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김남규 과장(☎ 044-203-4040), 이길준 사무관(☎ 044-203-40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모뉴엘 사건 이후 관계기관 조치현황

□ **(관세청)** 모뉴엘의 **수출 서류 조작** 및 **수출채권 할인 판매 정황을 수개월간 조사를 통해 확인**

○ 자체 정보분석 및 압수수색('14.9.16~18)을 통해 증거 확보 후 피의자, 참고인 등 12명 소환 조사('14.10.6~10.17)

○ 모뉴엘 대표 박홍석 등 3명 구속, 자금팀장 등 13명 불구속 검찰 송치('14.11.6), 현재 재판 진행중

□ **(금융위·금감원)** 사고발생 후, 10개 **은행 검사**('14.10.27~11.19) **실시**, 국내은행의 **수출금융 취급행태 개선* 지도**

* 수출채권 매입시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강화('14.10.31) 및 무역금융 취급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강화('15.1.8) 지도 등(금감원)

□ **(관련 부처)** 산업부, 기재부, 금융위, 금감원 등 **관계부처 합동**으로 **모뉴엘 사고원인 및 재발 방지대책 논의**('14.12월~)

○ **산업부·금감원 공동**으로 무보에 대한 **특별감사 실시**('15.1.22~3.13)

○ 수출中企에 대한 금융지원 **위축이 발생**치 않도록 **공문 및 협조 요청**

* 산업부 : 무역보험 中企지원 위축이 발생치 않도록 무보에 공문 조치('14.11.16)
시중은행 부행장 간담회 개최(산업부 1차관, '14. 1.15)
* 금감원 : 은행에「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협조 요청」공문 조치('14.11.7)
시중은행 부행장 간담회 개최(금감원 부원장, '14. 1.9)

○ 모뉴엘 사고로 인해 **무역보험 지원 위축 및 중소·중견기업 피해 우려가 제기**됨에 따라 **'무역금융 애로해소* 대책반' 운영중**('14.12월~)

* 무역협회, 무역보험공사, 중기중앙회에 **「무역금융 애로신고센터」를 설치**

□ **(검찰)** 무보, 수은 등 모뉴엘의 금융권 금품 로비 확인('15.1.23)

참고 2 무역보험 운영실태 관련 특별감사 결과

◇ 모뉴엘 사고 이후, **무역보험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**을 통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**미비점을 보완**하고, **유사사고를 방지**하기 위해 **특별감사 실시**

○ 기간/인원 : '14.1.22~3.13(30일) / 총14명(산업부 3명, 금감원 11명)

□ **㈜모뉴엘 관련 업무처리 소홀 및 규정 위반**

○ 인수한도 책정시 **부당지원**

○ **해외 현장조사 부실**

* 수입자 A社 및 위탁공장 현지 실사('12.2월) 時, 수입자 방문 미실시

○ 인수한도 책정시 **전결권 위반**

* 수입자 B社에 대한 한도책정시 부서장급 전결사항을 팀장이 부당하게 처리

□ **규정 필요사항에 대한 제도적 미비**

○ 보험 인수 심사시 **수출계약 진위확인 절차 부재**

○ **직수출, 위탁가공무역, 중계무역** 등의 **구분 없이** 100% **수출실적 인정**

* 모뉴엘은 해외 생산공장의 수출실적 확인이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**사기**

○ **상품별로 각각 한도**를 설정(수출실적의 1/3)하여 **기업에 과다한도 부여**

□ **인적 비리 및 조직 운영상 문제점**

○ 현재 산업부·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으나, **금융감독의 전문성 보강 필요**

○ 무보 **직원의 금품수수** 등 비위행위 발생

○ **신용평가부서의 기능 미흡* 및 고액한도 보유업체에 대한 관리 허술**

* 연 6만여건의 수입자 평가를 기업조사팀 4명이 수행